

영유아보육연구소 규정

제정 : 2015. 08. 07.

개정 : 2022. 08. 05.

담당자 : 교학팀(02-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업)	제4조(조직)
제5조(임무)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제8조(재정)
제9조(회계연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76조에 따라 대학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영유아보육연구소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세미나 및 특강 개최
2. 영유아교사교육
3. 부모교육
4. 학술지 및 보고서 발간
5.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본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제5조(임무)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위원은 연구수행 및 연구소 운영을 담당한다.
③ 사무직원은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연구소 사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소장, 연구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 관리 규정[규정분류코드 2-1-3-2]」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 2.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 3. 연구계약 체결
-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재정) ①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 ② 연구원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성서대학교의 「학술연구비 규정[규정분류코드 3-2-0-1]」에 따른다.
- ③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기획실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08.05.)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